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3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이해민·서왕진·김재원

김선민 · 차규근 · 김준형

조 국・신장식・정춘생

강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하였음.

그러나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를 검열하고,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심의제재를 남발하고 있어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와 무관한 안건까지 상정해 월권을 행사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특정 방송사에 대해 집중 표적심의를 일삼아 법정제재로 중징계를 남발하는 등 정권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악용되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

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거버넌스 구조가 문제임.

심지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인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제재조치를 방송사에 명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고 있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바뀌더라도 선거방송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전단 중 "방송사"를 "언론중재위원회·방송사"로, "9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로, "방송통신위원회는"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로, "방송통신위원회는"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①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	
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u>한다)는</u>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	
송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	
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2
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	
는 각 1명, <u>방송사</u> (제70조제1항	<u>언론중재위원회</u> · <u>방</u>
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u>송사</u>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 · 방	
송학계 •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	
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u>9명</u>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	<u>촉하는 9명</u>

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 ④ (생 략)

⑤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選舉 放送의 公正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選舉放送의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 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 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不公正한 選舉放送을 한 放送 社에 대하여 통보받은 制裁措 置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 ⑦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
망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u></u>
<u> </u>
·

⑥ · ⑦ (현행과 같음)